▶ 시설별 지적사항 세부내역 ◀

● 유락복지관

-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집행

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전원2명에 대해 지급한 명절선물비용은 기타후생경비(인건비 항목)로 지출되어야 하나, 차량유지비 등에 필요한 운영비로 지출하여세출예산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

- 조치사항: 운영비로 부적정하게 집행된 인건비(54,000원) 환수조치

● 장애인복지관

- 물품관리 미흡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4장(물품) 규정에 따라 시설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(비품)대장에 등록하여야하나.

2016.2.3. ~ 2016.5.31. 기간에 후원품으로 수령한 이동형엠프, LED TV, 애플 ipad 등 총 17건에 대하여 후원품 관리대장에 기관자산등록으로 분류하였으나, 2016년 물품(비품)대장에 등록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에 소홀하였음.

- 조치사항: 후원품으로 수령한 기관자산등록 물품에 대하여 2016년 물품(비품)대장에 등록 후 결과보고

● 유락복지관

-장애아동체육프로그램 정산관련 서류 미흡

- 장애아동체육프로그램운영 시 수영교실, 무용교실, 스트레칭 교실 실시 후 관찰기록지 및 프로그램일지를 기록하고 있으나, 강사료 지급 시 강사출근부를 작성하여 증빙서류 보완 필요.
- 2015.12.10. 무용교구비 322,500원 집행 시 증빙서류로 물품검수, 신용카드 매출전표 누락되어 있으므로 보완 필요.
 - 조치사항: 매월 강사출근부를 작성하여 증빙서류 보완하고, 누락된 물품검수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완

- (사)서울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부
 - 강사료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미공제

2016.1.4.~2016.5.24.까지 음악교실, 미술교실, 체육교실 강사비 지급 시원천징수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나, 원천징수세액을 미공제 하고 지급하였음.

- 조치사항: 2016.1.4.~2016.5.24.까지 지급된 음악교실, 미술교실, 체육교실 강사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